

#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7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개정사유

가.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, 요금 등의 납부 방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, 표준조례와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급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방법을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함.(안 제18조)
- 나.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.(안 제36조의2)
- 다.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재난지역 및 소방용수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문화 함.(안 제40조)
- 라.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 등 급수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.(안 제41조의2)
- 마. 법령 정비기준 및 표준조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- 나.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##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수도법」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수도법」에 따라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급수설비중”을 “급수설비 중”으로, “시설물은”을 “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사준공 후 1년이내”를 “공사준공 후 1년 이내”로, “시공자부담”을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시공자부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19조의2 중 “수도법”을 “「수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”를 “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6월 이내로 수도 사용자 등”을 “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”으로, “신청하되”를 “신청하며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분양시”를 “분양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3월이상”을 “3개월 이상”으로, “사유없이”를 “사유 없이”

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정수처분후 3월이상”을 “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본문 중 “의하여 당해”를 “따라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개선시”를 “개선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정에”를 “규정에도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수도사용자등(자동이체자에 한함)”을 “수도사용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2개이상”를 “2개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0조제6항 중 “직전3개월분”을 “직전 3개월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6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“20일 또는 말일”을 “말일”로, “10일전”을 “10일 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경우에 있어서는 수시”를 “경우에는 수시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,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 공익 등”을 “그 밖에 공익 등”으로 하여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
4.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

제41조의2를 제41조의3으로 하며,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제41조의2(급수설비의 보호) 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별표 5 위반내용란의 제1호 중 “급수내용”을 “급수 도용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수도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수도법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) ① 급수공사 비용은 <u>당해</u>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급수설비의 개조(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교체와 구경축소공사에 <u>한한다</u>),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(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)은 시에서 부담한다.</p> <p>② <u>급수설비중</u>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<u>시설물</u>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.</p>	<p>제11조(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) ①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. ----- <u>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한정한다</u> ----- ----- .</p> <p>② <u>급수설비 중</u> ----- ----- <u>시설물은</u> <u>신청인의 기부</u>에 의하여 ----- ----- 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(생략)</p> <p>제18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.</p> <p>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.~④. (생략)</p> <p>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, 상장유가증권,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8조(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)①----- ----- ----- 해당 -----.</p> <p>② ----- 공사준공 후 1년 이내 ----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시공사 자부담-----.</p> <p>③.~④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</p>
<p>제19조의2(수도계량기 설치 등) 수도계량기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수도미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, 유해화학반응 및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청동제질 등 친환경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의2(수도계량기 설치 등) --- ----- 「수도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6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 <u>수도 사용자</u>들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<u>6월</u> 이내로 <u>수도 사용자</u>들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되 <u>정당한 사유</u>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<u>의하여</u>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(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“호”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<u>분양시</u>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<u>당해</u>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수도 사용자</u>들이 <u>3월이상</u> 소재 불명이거나 <u>정당한 사유없이</u>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</li> <li>2. <u>정수처분</u>후 <u>3월이상</u> 경과하여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</li> <li>3.~5. (생략)</li> </ol>	<p>제26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 <u>수도 사용자</u>들은 <u>필요한 경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6개월</u> 이내로 <u>수도사용자</u> 등----- ----- <u>신청하며</u>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----- <u>분양시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<u>3개월 이상</u> ----- ----- <u>사유 없이</u> ----- -----</li> <li>2. <u>정수처분</u> 후 <u>3개월 이상</u> ----- -----</li> <li>3.~5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30조(요금의 조정) ① 시장은 매월 정하여진 날(이하 “정례일”이라 한다)에 <u>수도계량기</u>에서 계량한</p>	<p>제30조(요금의 조정) ① ----- ----- 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사용수량에 <u>의하여</u>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. 다만,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에는 수도전 <u>개선시</u> 구경별정액요금을 일괄징수할 수 있다.</p>	<p>----- <u>따라 해당</u>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<u>개선 시</u> ----- ----- ----- .</p>
<p>② 제1항의 <u>규정에</u> 불구하고 건물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동되어 수시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<u>당해</u>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<u>규정에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.</p>
<p>③ 제1항의 <u>규정에</u>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을 <u>수도사용자등(자동이체자에 한함)</u>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③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수도사용자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
<p>④ 제1항의 <u>규정에</u> 의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.</p>	<p>④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
<p>⑤ 1개소에서 <u>2개이상</u>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</p>	<p>⑤ ----- <u>2개 이상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요금을 계산한다.</p> <p>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⑥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(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<u>직전3개월분의 평균사용량</u>)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한다.</p> <p>⑦ <u>제6항의 규정에 의한</u>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제33조(납기의 징수방법)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, 납부마감일은 매월 <u>20일 또는 말일</u>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<u>10일 전까지</u>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<u>경우에 있어서는 수시</u>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<u>다만,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<u>직전 3개월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<u>제6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3조(납기의 징수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<u>말일</u> ----- ----- <u>10일 전</u> -----.</p> <p>-- <u>경우에는 수시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40조(요금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군수·구청장에게 설치결과를 통보하고 계량기를 설치한 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3. <u>기타 공익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제36조의2(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)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,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0조(요금등의 감면) ① ----- 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<u>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에 따른 <u>재난지역</u></p> <p>4. <u>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공익 등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07 280 383 324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167 616 790 728"><u>제41조의2</u>(음용물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지원) ①·② (생략)</p>	<p data-bbox="821 280 1436 526"><u>제41조의2</u>(급수설비의 보호) 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821 616 1436 795"><u>제41조의3</u>(음용물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<b>관계법령</b>	<p>□ 「수도법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72조(수도요금 등의 납부)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·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li> </ul> <p>□ 「건설산업기본법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28조(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)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, 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골구조,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: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</li> <li>2.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: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</li> </ol> </li> </ul> <p>□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0조(하자담보책임기간)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.</li> </ul>
<b>관련법규 정비대상</b>	<b>“해당사항 없음”</b>
<b>특이사항</b>	<b>“해당사항 없음”</b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, 요금 등의 납부 방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.

## 4. 작성자

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총무팀장  
남 현 우 대결